	긴급복지 지원요청서						처리기간		
							지체없	0	
요청인 또는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지원 사의 관계		
신고인	주 소					(전화 :)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금주		계좌번호				
	세대주와의 관계 성명	116	주민등록번호	동거여부	건강상태	취업	취업상태 전화번		
		(외국인등록번호) ((미동거 사유)	(장애/질병)	직업	직장명	(집/직장)		
가족사항									
위기상황									

〈소득기준〉

2023년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중위소득 75%	1,558,419원	2,592,116원	3,326,112원	4,050,723원	4,748,016원

〈재산기준〉

- 재산기준 (재산의 의미=일반재산+금융재산+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 종합저축-부채)						
지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			
금액(천원)	241,000	152,000	130,000			
- 금융재산 기준 : 600만원 이하 (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						

긴급복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요청인 : (서명 또는 인) 또는 대리나 직권 요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ㅇㅇ구청장 귀하

	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.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 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,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 3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.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유의사항	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나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다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
	건급지원대상자 : (서명 또는 인) 또는 위 사항을 고지한 긴급지원담당 : (서명 또는 인)
현장확인 내용	

소득・재산 신고서 [□신규 □변경]

			3 중 급청구군는 경프시스템	그의 글	4/1 705	그 구도 ᆻ	ㅂ기기. 		
		1원 성명1)							
	근로	상시근로	원		원		원		원
	소득	일용근로	원		원		원		원
		농업소득	원	/	원	,	원	,	원
	사업	(주재배작물명)	()	()	()	()
	소득	임업소득	원		원		원		원
_		어업소득	원		원		원		원
소득사		기타(자영업)	원		원		원		원
	재산	임대소득	원		원		원		원
항	소득	이자소득	원		원		원		원
		연금소득	원		원		원		원
	기타 소득	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(□무료임대)	원		원		원		원
		공적이전소득2)	원		원	(지	기 타 자체 지원금등)		원
	(주	건축물 택, 건물, 시설물)			원	토 지			원
		선 박			원	입목재신	<u> </u>		원
	항공기				원	어업권			원
	자동차		□ 차량명(E (생업용/경				
					원) [기타 (원)		01	
		금융재산			HO	+¬1			원 이
재	동 산		□ 소 (마리,	원)	분잉 조합원				원 원
산 사 항			□ 돼지(마리, □ 기타가축(마리, □ 종묘(□ 기계·기구류(□ 기타(원) 원) 원) 원) 원)	회원				원
			소계 (A-(B+C+D))						원
			(A) 일정기간3) 이내에 증	여하거나 처분한	재산가액				원
	기티	나 산정되는 재산	(B)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						원
			(C) 부채 상환액						원
			(D)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	이 소비한 금액					원
н	nLi	l융기관 대 출 금			원 i	금융기관외	기관 대출금		원
부 채		임대보증금							원
		개인간 부채	□ 판결문·화해·조정조서0	∥ 의한 사채	(원)	
□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(원) 가구특성 □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·피부양보조금 (원) 지출비용4) □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 (원) □ 대학생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(원)									
위외	나 같이	소득·재산 내역을 (닌고합니다.						
년 월									
						(서명 또는 인)			

- 1)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) 공적이전소득 :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 금품 3)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/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) 가구특성지출비용 :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.

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1.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
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		

- 2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
- ※ 유의사항 :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(인감 포함)으로 대신합니다.

세대주와의 관 계	동의자 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^{1),2)}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	금융정보 등의 제공 시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⁾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

- 1)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· 국토교통부장관·교육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특별시교육감·광역시교육감·특별자치시교육감·도 교육감·특별자치도교육감(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, 이하 '보건복지부장관 등'이라 한다)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2)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3)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(만일 동의하지 않으면, 금융 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. 단,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「금융정보 등 제 공 사실 통보요구서」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.)
- 3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뒷면 참조
- 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: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(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 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)까지,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
- 5. 정보제공 목적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기초연금법」, 「장애인연금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아이돌봄지원법」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·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

	-11				- 1	1	1
1	11 1	11 11		1 11		1 '	1 1
	- 11' - 1		- 1	. 1.		· .	
1				1 11		1 :	1 :
i	- 17	U U U	11-4	1 11	l O I	: 1	, IOI
	1.1			1 11	, ~		, 01
1			171	4.0	' ==		

금융기관장 ·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
금융기관 등의 명칭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
- 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- 2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- 5)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- 6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- 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- 8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- 9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- 10) 「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- 11)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- 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- 13)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금융정보 등의 범위

- 1. 금융정보
- 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: 3개월 이내 평균 잔액, 3개월 입금액 총액*
- *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
- 2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 시세가액
- 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동성예금증서: 액면가액 5) 연금저축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- 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 할인액
- 2 신용정보
- 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- 2)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- 3 보험정보
- 1) 보험증권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) 연금보험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유의사항

-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·기피할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2조제8항,「기초연금법」제11조제4항,「장애인연금법」 하될 수 있습니다
- 이 동의서는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5조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1조,「기초연금법」제10조,「장애인연금법」제8조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1조.「장애인복지법」제50조의2.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5.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2항,「주거급여법」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
 - 호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3조 및 「기초연금법」제11조제2항, 「장애인연금법」제 11조,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의 금융정보 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,「기초연금법」 제12조제6항,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제7항 및 「장애인연금법」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2조의3,「장애인복지법」제50조의3제6항,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제15 조제6항,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의3제3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6, 「주거급여법」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 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,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공	동이용의	목적(공동이용을	통하여	처리하는	사무) :	사회복지서비스	및 급여	제공(변경)	신청
-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	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	----

2.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: 8 종

공동이용행정정보	동의여부(동의시 서명)
국가유공자확인원	
사업자등록증명	
외국인등록사실증명	
자동차등록원부(갑)	
자동차등록원부(을)	
출입국사실증명	
폐업사실증명	
휴업사실증명	

3. 이용기관의 명칭 :

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<u>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</u>음)

z	2	u z	ت د
: (서명	명:	동의인 <u>성 명</u>	동의인
:	버호 :	<u> 주민등록번호</u>	
<u>:</u>	॒ ÷	<u>전화 번호</u>	

긴급지원신청 관련 환수동의서

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 금융거래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며, 현재 금융재산(본인 및 가구원 전체 명의의 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, 예금, 적금,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보험 및 금전식탁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)이 6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.

민간보험 수령(예상)금이 없으며, 이후 <u>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</u>에 긴급지원 받은 금액 **전액을 반환** 할 것을 확인합니다.

<u>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,</u> 긴급복지지원법 제 15조 1항에 의거하여 지원이 중단되고,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전액이 환수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확인자 긴급지원 대상자 : (서명 또는 인)

또는 대리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처리기간	즉시
	성 명		생년월	월일	
신청인					
	 주 소				
(지원대상자)	-				
			(전화:)
	금융기관		예금주	5	
긴급지원					
수급계좌	계좌번호				
	이번 시웨러 비그	조의2제1항 및 같은	버시체트	1회 레이포레이	مخلماا تتاعا
		쪼의2세1영 및 ᇀ근 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		•	18에 따다
		되고 시합하여 할 것들	в пон-	· 년	월 일
				인	걸 글
		신청인:		(서	명 또는 인)
시자 • 구스	૽ 구청장 귀하				
<u> 140 円 </u>	<u> </u>				
첨부서류 7	계좌번호가 표시된 긴	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	금통장 사본	분 1부	
		처 리 절 차			
		시 니 글 시			
신청서 작성	■ 접 수	→ 검 토	결 7	대 → 계	좌번호 등록
	시・군・구	시・군・구	시・군	• 구	
신청인	(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)	(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)	(긴급복지 담당부	[지원 서)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